

KG패스원 박철한 강사

행정법 총평 및 해설

1. 올해 기출문제의 체감난도

국가직 9급과 비교해 볼 때 보통 서울시는 더 쉬운편이었으나, 올해는 국가직 보다 어려웠다. 다만 그 어려움의 정도가 보통 수험생들이 느낄 때 너무 어렵다고 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즉 보통 수준의 난이도였다. 따라서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였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3-4문제 정도로 보통 수준의 난이도였다.

2. 출제의 형태

법령문제가 3-4문제로 보통 시험 유형과 비슷하고, 약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케이스의 복합유형이 있었으나, 크게 유형변화에 따라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대책

어차피 조정점수로 되어 있어 문제가 어려웠다고 쉬웠다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출제 즉 지방직과 7급이 남아 있는데, 지방직의 경우는 보통 국가직과 서울시보다 어렵고, 만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각론도 있고, 선택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에도 대비하고 심화해서 공부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주의할 점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찾는 것이다. 당장 다가오는 지방직과 7급을 치루어야 하는 수험생들은 오늘 시험을 계기로 갑자기 판례의 양을 늘리고 다른 교재로 바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의 책을 봐도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고, 누구의 책을 봐도 어떤 지문은 없는게 일반적이다. 그 한 지문 더 나왔다고 해서 그 교재가 명저도 아니고 안 나왔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선생님의 교재를 보았던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가오는 시험은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험은 안 본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뻔히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떨어진다. 따라서 향후 시험을 대비하여 새롭게 양을 늘리기 보다는 기본서를 다시 한 번 회독하고 새로운 내용의 모의고사로 자신의 취약 부분을 점검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직과 7급에서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 ②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 ③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 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정답 ④

- ① X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헌재 1998.9.30, 97헌바38)
- ② X 과세기간 중간에 법이 개정된 경우 이는 진정 소급효가 아니라 부진정 소급효이다.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 공익성이 더 크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헌재 2001.2.22, 98헌바19).
- ③ X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된 경우 구법 적용에 의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대판 1982.12.28, 82누1).
- ④ O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판 2002.12.10. 선거2001두3228)

3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 ㄴ.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 ㄷ.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ㄹ.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 ㅁ.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 ㅂ. 환매권의 행사
- ㅅ.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

- ① ㄱ, ㄴ, ㄷ, ㅂ
- ② ㄱ, ㄷ, ㅁ, ㅂ
- ③ ㄴ, ㄷ, ㅁ, ㅅ
- ④ ㄴ, ㅁ, ㅂ, ㅅ

4 정답 ④

- ㄱ. ㄴ : 변상금의 경우는 공법관계이며, 대부료의 경우는 사법관계이다.
- ㄷ.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법관계이다. (대판 1993.7.13, 92다47564)
- ㄹ. 조합의 경우는 공법관계이다.
- ㅁ.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다(대판 1994.1.25, 93누7365).
- ㅂ. 환매권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사법상 매매를 성립시키고 공용수용 해제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87.4.14, 86다324).

八.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9.9.12, 89누2103).

5 행정상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안전처장·인사혁신처장과 같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부령제정권을 가진다.
- 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 ③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
- ④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6 정답 ①

- ① X 부령제정권은 각 부 장관만이 가진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장과 인사혁신처장은 대외적은 구속력을 발하는 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령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 ② O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4.10.28, 99헌바91).
- ③ O 집행명령이라 함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고서양식 등)을 법령의 위임 없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06 국가직 7급 이러한 집행명령에서는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다. 04 관세사, 04 국가직 9급, 05 서울시 9급
- ④ O 위임명령은 행정규칙과 달리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도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 ㄴ. 부하 공무원에 대한 상관의 개별적인 직무명령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 ㄷ. 일정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송수단을 다 거친 후에는 더 이상 행정행위를 다룰 수 없게 되는 효력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라 한다.
- ㄹ.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ㅁ.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ㄴ, ㅁ ④ ㄷ, ㄹ

8 정답 ④

- ㄱ. O 이런 경우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 ㄴ. O 직무명령은 내부적 행위에 불과한 바 외부적 행위를 의미하는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
- ㄷ. X 이는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청 스스로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한다.
- ㄹ. X 집행력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ㅁ. O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처분중 물적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9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권한은 중대·명백한 하자이므로 항상 무효사유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명백성보충요건설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의 기준으로 중대성요건만을 요구하지만,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명백성요건도 요구한다.

10 정답 ①

- ① X 객관식에서 항상이라는 단어, 예외없이라는 단어는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야 하는데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과세를 부과하거나, 5급 이상 공무원의 의원면직시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장이 수리하여도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대판 2003.1.10, 2002다61897)
- ② O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대판 1986.9.23, 85누838).
- ③ O 계쟁 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대판 1987.3.10, 84누158).
- ④ O 명백성보충요건설에 대한 내용 그대로이다.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11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상 확정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위반이 된다.
- ④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없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12 정답 ③

- ① O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 ② O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
- ③ X 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판 2000.11.28, 99두5443).
- ④ O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1.4.13, 2000두3337).

13 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 ③ 사실관계나 법적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의 존속이 공익상 중대한 장애가 된 경우
- ④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14 정답 ②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대판 1993.12.7, 93누11432).

15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상 시설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요건이 충족된다.
- ② 공원매점에서 퇴거할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6 정답 ①

- ① X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대판 1998.10.2, 96누5445).
- ② O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8.10.23, 97누157)..
- ③ O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6.11, 2009다1122).
- ④ O 공법상의 의무는 행정처분에 의하거나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7 「국가배상법」내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 ② 「국가배상법」은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③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 ④ 국가배상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나, 재판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18 정답 ②

- ① O 손실보상의 경우는 일반법이 없지만 손해배상의 경우는 국가배상이 일반법이다.
- ②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라 되어 있어 명시적으로 고의 또

는 과실을 요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 ③ O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을 요한다.
- ④ O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다(대판 1972.10.10, 69다701).

1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자는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행정소송이 제3자 기관인 법원에 의해 심판되므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판단하는 데 대하여,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에서 자기통제 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 ② 행정소송은 철저한 대심주의를 관철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에 한정하여서만 심리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행정심판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진행 중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행해지면 동일한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영향이 없지만,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20 정답 ③

- ① X 심판과 소송 모두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7.11.10, 86누491).
- ② X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변론주의 보충설을 취하고 있다. (대판 1994.4.26, 92누17402)
- ③ O 행정심판은 권력분립에 문제가 되지 않아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소송의 경우에는 기존 처분을 취소하는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다.
- ④ X 반대로 기술되어 있다. 인용이 된다면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소의 이익을 상실하겠으나, 기각이 되었다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 소의 이익이 지속된다.

2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고 있다.
- ② 제3자의 정당한 이익까지 희생시키면서 신뢰보호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 ③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 ④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견해표명이 있는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22 정답 ④

- ① X 이론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가 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법적 안정성설이다. 04 국가직 9급
- ② X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공익에 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X 꼭 적법한 선행조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 무효까지는 신뢰하기 어렵지만 위법인 경우는 보호가치가 있다면

신뢰가 보호된다.

- ④ O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는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대판 1996.8.20, 95누10877).

23 다음은 「식품위생법」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7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시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 문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① 관계 공무원이 계고 등 사전조치 이후 행한 영업 표시물의 제거나 삭제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②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
- ③ 공무원이 적법하게 영업소의 간판을 제거하더라도 영업주에게 간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④ 위 「식품위생법」 제79조 제4항은 비례의 원칙 중에서 필요성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24 정답 ④

- ① X 영업 표시물의 제거나 삭제는 직접 강제에 해당한다.
- ② X 단순 게시문의 부착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취소소송이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 ③ X 적법하게 간판을 제거한다면 이는 위법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이 될 수 없다.
- ④ O 필요최소한의 조치는 필요성을 의미한다. 비례의 원칙은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도 요소로 한다.

2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를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6 정답 ③

- ① O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적 부관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 ② O 부담인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92.1.21. 91누1264).
- ③ X 부담의 경우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철회사유가 될 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행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08 국가직 7급
- ④ O 대판 1997.3.11, 96다49650

27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해 A구의 보건행정담당 공무원 甲이 관내 일반·휴게·계절음식점 업주에 대해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수권(授權)없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 ② 위생지도의 상대방인 일반·휴게·계절음식점 업주가 甲의 위생지도에 불응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당해 업주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甲의 위생지도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지도에 속하지만 「행정절차법」상의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 ④ 甲의 위생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생지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과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28 정답 ①

- ① X 행정지도에 따를 것인지의 여부는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행정지도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05 선관위·노동부
- ② O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 ③ O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지도의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O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51조).

29 다음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에 근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ㄴ.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의 신고행위와 징수처분
 ㄷ.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ㄹ.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30 정답 ③

- ㄱ. O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대판 2001.6.26. 99두

11592)

- ㄴ. X 취득세 신고와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대판 2006.9.8. 2005두14394)
- ㄷ. O 대집행의 제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판 1996.2.9. 95누12507)
- ㄹ. O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판 2008.8.21. 2007두13845).

3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의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④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2 정답 ②

- ②의 경우는 이유부기의 예외에는 해당하지만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나,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34 정답 ①

- ① X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②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③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④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35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 ①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 ③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 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 ④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다.

36 정답 ①

- ① O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대판 1987.9.22. 87다카1164).
- ② X 일부견해는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자고 주장하나 현재 수용되지 않고 있다. 06 경복 9급
- ③ X 이 또한 소수견해일 뿐이다. 06 경복 9급
- ④ X 이 또한 소수견해일 뿐이다. 06 경복 9급

37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
- ② 「광주민중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는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송
-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

38 정답 ②

-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 해당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판 2008.4.17.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 ② 광주민중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 및 소송의 성격(당사자소송). (대판 1992.12.24. 92누3335)
- ③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판 2002.12.10. 2001두6333).
-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이다. (대판 2004.7.8. 2004두244)(즉 취소소송)

39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

여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 행위이다.
- ③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40 정답 ④

- ① O 단체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4조)
- ② O 행정심판청구 서면의 표제가 반드시 행정심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대판 1985.7.9, 83다189).
- ③ O 행정심판법 제20조 제2항
- ④ X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이의제출기간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기간 보다 짧게 정하였다고 하여도 같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이의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제출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고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1990.7.10. 89누6839)